



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Q&A

Q 용자 신청 대상의 소득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나요?

- 아니요. 2022년 소득기준인 4,194,701원은 가구원수와 상관없는 고정기준입니다.
※ 중위소득 3인가구 기준은 소득기준의 출처를 의미합니다.

Q 용자는 생애 한번 밖에 안되나요?

- 아니요. 1인당 총 2,000만원이내에서 용자신청하실 수 있으며, 기존 용자하신 금액을 전액 정상 상환한 경우 재신청 가능합니다. 다만, 부정대부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.

Q 용자 실행 후 조기상환 가능한가요?

- 네. 별도의 조기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가능합니다.
※ 단, 일부 조기상환했을 경우 용자금 잔액을 재분할 산정하여 납부 불가능합니다.

Q 용자 최종 실행은 인터넷밖에 안되나요?

- 네. 저금리 유지 및 거동 불편자를 위해 인터넷 및 휴대폰 앱에서만 용자 실행이 가능합니다.
※ 단, 용자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(인터넷)와 공단 각 지사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.

Q 용자 신청자와 실행자가 달라도 가능하나요?

- 아니요. 용자 신청자와 실행자는 동일해야 합니다. 그리고, 차량 구입비나 주택 이전비 같은 경우는 매매, 임대 계약서상 계약자와 용자신청자도 무조건 동일해야만 가능합니다.



사회적 위험으로부터
일하는 삶을 보호하는 희망버팀목

고객상담 및 안내

대표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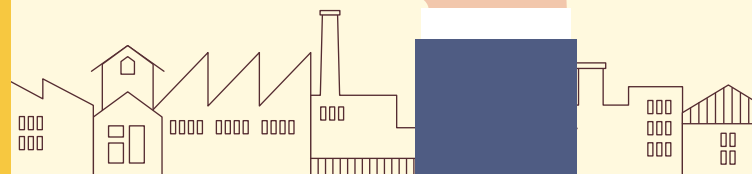
 1588-0075



www.comwel.or.kr



2022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안내



1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신청은 누가 할수 있나요?

● **공통요건** : 2022년 월평균소득 4,194,701원* 이하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

*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11호 중 3인가구 중위소득

- ▶ 산재법에 따른 유족급여 수급권자 (단,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)
- ▶ 산재법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
- ▶ 산재법에 따라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 결정 받은 자
- ▶ 용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환화탄소(CS2) 질병판정자
- ▶ 용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로 평균 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(의료비·혼례비·장례비에 한함)

《용자 대상자 인정 특례》

- 장해등급 제1급~제3급 판정자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경우, 산재노동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“배우자·자녀·부모” 중 1순위자도 용자대상자로 인정
※ 주민등록등본 상에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는 경우 해당

2 용자 종류를 알고 싶어요

의료비	● 산재노동자 본인 또는 배우자, 그 직계가족의 치료에 드는 비용(본인부담 진료비 한도, 배우자 직계가족 의료비 포함)
혼례비	● 산재노동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드는 비용
장례비	● 산재노동자의 배우자, 그 직계가족의 사망에 따른 장례에 드는 비용 (배우자 직계가족 장례비 포함)
취업 안정자금	● 장해판정자(1~9급) 중 직업(원직, 재취업)에 복귀한 후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 경우 그 취업유지에 드는 비용 - 고용보험 피보험자격(일용근로내역) 취득 필요
차량 구입비	● 산재노동자 본인, 유족급여 수급권자, 생활지원규정 제14조제2항에 의한 배우자·자녀·부모 중 제1순위자가 생계 및 생활을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 ※ 선별형식 운영
주택 이전비	● 산재노동자 본인, 유족급여 수급권자, 생활지원규정 제14조제2항에 의한 배우자·자녀·부모 중 제1순위자가 주택 이전을 위해 드는 비용(매매는 제외)

3 신청기한은 어떻게 되나요?

의료비	●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
혼례비	● 결혼일 전·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
장례비	● 사망일부터 90일 이내
취업 안정자금	●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
차량 구입비	●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(건설기계) 매매계약일 부터 90일 이내
주택 이전비	●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

4 용자금액을 알고 싶어요

● **용자 한도액** : 1세대 당 총 2,000만원 범위 내에서
각 용자 종류별 한도 내 가능

의료비·혼례비· 장례비·취업안정금	차량구입비·주택이전비
1,000만원	1,500만원

- ▶ 용자한도 범위 내에서 용자종류별 중복신청 가능
- ▶ 주택이전비 :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한도 이내 (단, 재계약시에는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추가 인상분 한도 이내)

5 용자 조건이 있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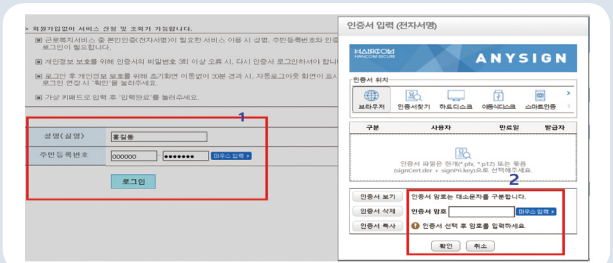
- **이율** : 연 1.25%(신용보증료 연 0.7% 별도 부담)
- **용자기간** : 5년 이내
※ 1년 거치 4년, 2년 거치 3년, 3년 거치 2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(용자실행 이후 변경불가)
- **대행금융기관** : 우리은행(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용자)
- **용자제한 사유** : 1. 2022년 월평균소득 4,194,701원 초과
2. 신용보증지원이 불가한 경우 등

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/청/방/법

인터넷신청



1 근로복지서비스 로그인(<http://welfare.comwel.or.kr>)



2 산재근로자대부신청(공인인증서 필요)



3 신용보증신청 → 개인정보활용동의 → 용자신청서 작성 후 접수

방문신청

-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및
지사 경영복지부(전국 61개소)